

##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10. 16. 김명섭의원 외 4인  
나. 회부일자 : 2007. 10. 16.  
다. 상정일자 : 2007. 10. 22.(제13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)

### 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김명섭 의원)

#### 1. 제안이유

1995.02.03 제1대 제천시의회 개원 시 상임위원회가 없을 때 제정된 규칙을 지방자치법 제75조(청원의 심사처리)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청원심사규칙을 현 제천시의회 원구성 기능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, 2007. 10.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동법시행령 조항을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를 제 60조로 개정하고
- 제5조(이의신청) ②항 이 경우 의장은 **그 청원을 회부한 소관상임위원회 또는** 를 제6조제3항의 앞에 삽입하여 이의신청 청원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가 있는 경우 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 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개정
- 제6조(청원서 회부와 심사)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

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를

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·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 회부한다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상학)

-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은 1995. 2. 3일 상임위원회가 없을시 제정된 규칙으로서
- 청원서 접수 시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접수된 청원을 신속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기가 곤란하며
-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75조에서도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
- 상임위원회가 구성 되어있는 인근 자치단체 4개시(청주시, 충주시, 순천시, 부천시의회) 청원심사규칙을 검토한 결과 각의회 모두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·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한다고 되어 있음을 참고 할 수 있으며

○ 금번회기 내 상정된 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청원서의 신속한 심사처리를 위하여 제천시의회 내부조직에 적합하게 상임위원회에 회부 처리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 됩니다.

#### 4. 질의답변 요지

“ 없 음 ”

#### 5. 소수 의견

“ 없 음 ”

#### 6. 토론 요지

“ 없 음 ”

#### 7. 심 사 결 과

“ 원 안 가 결 ”

#### 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제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